

(재)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고 제 2024-38호

2024 장년층생애설계지원사업 씨앗동아리 선정결과 안내

「2024 장년층생애설계지원사업 씨앗동아리」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, 씨앗동아리 모집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
2024년 3월 21일

(재)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

☐ 지원대상

구분	동아리명	교육 및 학습 주제	비고
1	한아름봉사회	원에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	
2	탐나는 드로잉	수채화 드로잉 역량 강화	
3	퀸하모니 중창단	여성 중창단 가창 역량 강화	
4	어울령난타	타악 퍼포먼스 역량 강화	
5	숨비민속무용단	문화예술공연(한국무용) 역량 강화	
6	탐나는 5060인생학교 제11기	농작물 재배를 활용한 봉사활동	
7	5060인생학교 12기	천연염색활동 재능나눔 및 기부	
8	고치글라	다문화 어린이 대상 봉사활동	

※ 선정 동아리 중 지원포기를 희망할 경우 차 순위 대상에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음

※ 3회 이상 연락이 어려울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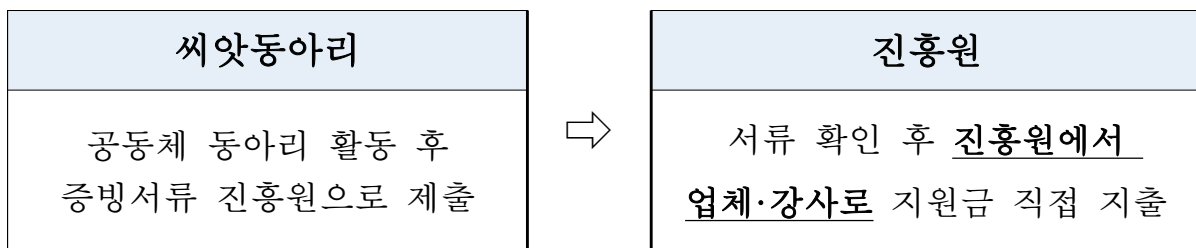
※ 동아리별 지원금 확인은 개별 연락바람

□ 향후일정

- 수정활동계획서 제출: 2024. 3. 21(목) ~ 3. 22.(금)
 - 제출서류: 수정활동계획서 1부, 강사카드 1부(붙임참조)
- 오리엔테이션: 2024. 3. 25.(월), 10:00~
 - ※ 오리엔테이션 불참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씨앗동아리 활동 운영지원: 2024. 3. 25.(월) ~ 10. 31.(목)
- 씨앗동아리 활동모니터링 및 컨설팅 운영: 2024. 6. ~ 10.
- 사업성과발표회: 2024. 12. (예정)

□ 지원금 집행절차 및 준수사항

○ 지원금 집행 절차



※ 강사료를 제외한 지출 건에 대하여 매월 첫째 주까지 들어온 관련 서류 검토 후 월 1회 일괄 집행(단, 급한 사항일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집행 가능)

※ 강사료는 2회에 나누어 진흥원으로 증빙서류 제출
(교육 일정의 50%, 100% 진행 완료 이후 제출)

○ 지원범위

지원범위		
강사료	내용	강사수당
	증빙서류	①결과보고 ②출석부 ③강의일지 ④이력서 및 통장사본
	집행내용	· 동아리 회원에게 강사료 지급 불가 · 3급~5급 강사수당 지급 기준 적용 · 강사료에 강의료, 원고료 등 일체 사례금 포함
임차료	내용	· 교육장, 교육기자재, 차량 임차료 등 ·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 공간 대여 업종이 표기되어야 함
	증빙서류	사전 : ①견적서(거래명세서) 사후 : ①납품서 ②납품사진 *계좌이체시 사업자 등록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
홍보비	내용	현수막, 리플릿, 교재 제작 등
	증빙서류	사전 : ①견적서(거래명세서) ②홍보, 인쇄물 시안 사후 : ①납품서 ②납품사진
재료 구입비	내용	동아리 활용에 직접 필요한 재료만 인정
	증빙서류	사전 : ①견적서(거래명세서) 사후 : ①납품서 ②납품사진

※ 물품은 원칙적으로 개인자산으로 귀속되는 것은 구입할 수 없으나 동아리 활동 관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액일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지출 가능

○ 강사수당 지급 기준

(단위 : 천원)

구분	대 상	지급액
1급	· 대학의 교수 · 전·현직 지방의회의원(의장 포함) ·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및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인사 · 언론인 · 공유직관단체 임원(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, 공기업, 공사·공단 등 임원 이상) · 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, 중역 · 판·검사 및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의사, 한의사, 기술사,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· 전·현직 4급 이상 공무원 ·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(취미, 소양, 외국어, 전산 강사 제외) ·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·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	· 최초 1시간 250 · 초과 매시간 120
2급	· 대학교의 강사 · 전·현직 5급 이하 공무원 · 중소기업체 임원급 · 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 · 정부출연,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· 체육지도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 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·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·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	· 최초 1시간 150 · 초과 매시간 80

구분	대 상	지급액
3급	· 외국어 강사 ·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·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	· 최초 1시간 100 · 초과 매시간 50
4급	·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	· 최초 1시간 80 · 초과 매시간 40
5급	· 각종 교육 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	· 최초 1시간 60 · 초과 매시간 30

※ (재)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규정(2024. 1. 12.) 지급기준 준용